

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류 안내

수급자격 인정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■ 폐업 사유가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것 ■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폐업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이전이 곤란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업장 이전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불인정
준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):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보험 상실처리(근로복지공단)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보험 완납증명서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, 무인민원발급기)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 사유 확인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차 재계약 거부로 인한 폐업 확인서(별도 양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 이전 노력과 이전이 곤란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○ 직전 임대차계약서 ○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 확인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만료 통지서 등 ○ 사업장 이전 노력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 사무소에 이전을 위해 방문 및 물건 상담 등 - 방문 날짜, 사업장 이름(도장), 확인 물건 내용, 계약 어려운 사유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추가서류(필요시)

※ 필요시, 추가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.
 ※ 진주고용센터 팩스: 0508-8230-0475



